

■■■■ **Question**     우리 회사의 사업(전기, 가스도매, 부동산)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5”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 규모는 단위사업장 근무 직원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업장 상시 근무인원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 하에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사의 소속 사업장 규모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직근상위의 사업장에서 소속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보건관리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중 재해발생사건의 관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타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출장을 갔다가 그 출장 간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발생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어디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야 함.

《을 설》 재해자의 인사·노무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야 함.

동 직무규정은 재해발생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2개소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발생장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 2) 교통사고, 출장 중 재해 등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다만, 당해근로자의 소속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시 근무 장소가 다를 경우 제외). 여기서 “사업장이외의 장소”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출장근무 중 발생한 재해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등은 출장 중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발생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것임(《갑설》이 타당함).


■■■■ Question 고무용 가압성형기가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의 하나인 프레스는 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비교적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고무용·모래 등의 가압성형기는 프레스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프레스 및 전단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노동부고시 제3호). 따라서 고무용 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가 아니므로 별도의 자체검사원을 둘 의무 및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1) “프레스 및 전단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고시 제3호, 84. 1. 20)” 폐지,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심사기준(고시 97-35호)” 제2조제1호 참조
-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7. 4. 10개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와 제439조, 제440조와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어떤 높이 및 깊이의 기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통례적으로 볼때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들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항이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는 건설작업에서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작업에 있어 추락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高所作業)의 경우에는 제8조의 방책 설치 등에 그치지 않고 비계조립,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추락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작업 형태, 작업조건, 신체적인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